(토목-002) 하천옹벽 보강공사현장 노후옹벽 붕괴사고

공사명	○○미리 구거옹벽 보강공사			
사고일시	2017년 9월 20일(수) 18:40분경		기상상태	맑음
소재지	경기도 광주시	사고 종류	무너짐(붕괴·도괴)	
구조물 손실	옹벽	인적피해	부상 1명	
장비 손실	-	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	해당(),	해당없음(〇)

가. 사고개요

1) 공사개요

○ 공사종류 : 옹벽 및 절토사면

○ 규모 : 옹벽 설치공 H=4.0m, L=14.0m, 하상정비(돌깔기) 공사 L=17.0m

○ 공사기간 : 2017.9~2017.10

2) 사고경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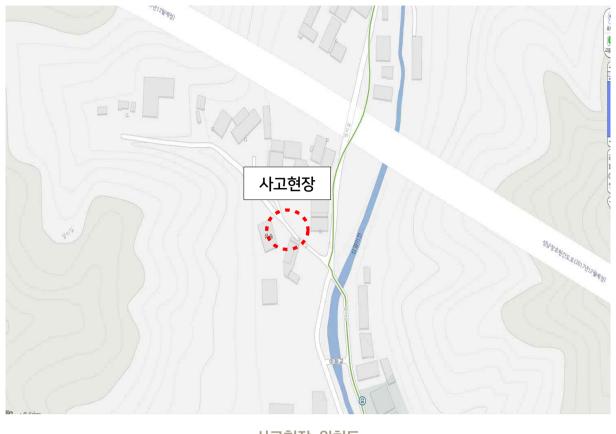
○ 옹벽보강공사(기존 노후옹벽 합벽시공)의 자재반입(하상정비 발파석)을 위해 기존 노후옹벽구간에 연접하여 덤프트럭(25ton)이 진입할 때 노후옹벽이 토사와 함께 붕괴되어 하부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 하반신이 매몰된 사고

3) 사고원인

○ 사고현장은 작업구간이 협소한 곳으로서 교통통행구간 확보를 위해 기존 노후 옹벽부의 전도 방지를 위한 바닥판 폭을 확보하지 않고, 안정성 확보를 위한 흙막이지보공 설치 등 별도의 보강 시설 없이 노후 옹벽 상부에서 덤프트럭(25t)으로 발파석 자재를 과적하여 반입하던 중 상부 하중의 증가에 따라 노후옹벽이 토사와 함께 붕괴된 것으로 추정

나. 재발방지대책

- 굴착공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검토를 통해 인접한 구조물에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공법으로 보강한 후 굴착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기존 옹벽 상부를 통행구간으로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우회 가설도로 설치 등 충분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공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.



사고현장 위치도



